#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도읍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681

발의연월일: 2024. 7. 12.

발 의 자:김도읍・권성동・주진우

윤한홍 · 조지연 · 이성권

구자근 · 김예지 · 신동욱

유상범 · 장동혁 · 이달희

김대식 • 박대출 • 한기호

의원(15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함께돌봄센터를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 설치기준과 운영, 종사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하고 있음.

이에 센터장을 비롯한 센터 종사자는 부령에 따라 사회복지사 및 보육교사, 유치원교사, 청소년지도사 중 가운데 경력자이 있는 사람이 종사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두고 있으나 종사자의 별도 결격사유는 두고 있지 않음.

최근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는 점과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을 대상으로 등·하교 전후 또는 야간 및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각종 체험활동을 비롯해 교육·문화·예술·체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아동과의 장시간 또는 지속적인 대면접촉이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'안전한 아동의 돌봄서비스 제공'이라는 센터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이나 중대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이센터에 종사하는 것은 제한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살인 범죄 및 아동 및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범죄, 마약 및 성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이 센터에 종사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규정해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안전을 보다 확보하고자함(안 제44조의2).

##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4조의2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7항(종전의 제5항) 중 "다함께돌봄 센터의"를 "그 밖에 다함께돌봄센터의"로 한다.

-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.
- 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(이하 이 조에서 "종사제한범죄"라 한다)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면제된 날부터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범죄의 종류, 죄질, 형기의 장단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 - 가. 「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
  - 나. 「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의2, 제5조의4, 제5조의5, 제5조의9 및 제11조에 따른 죄
  - 다.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죄

- 라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제1항제2호부 터 제4호까지, 제3조부터 제9조까지, 제14조, 제14조의2, 제14조 의3 및 제15조에 따른 죄
- 2. 종사제한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- ⑥ 종사자의 전력 조회에 대해서는 제29조의3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 이 경우 '아동학대관련범죄'는 '종사제한범죄'로본다.

#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4조의2(다함께돌봄센터) ① ~ ④ (생 략) < <u>신 설&gt;</u>	제44조의2(다함께돌봄센터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
	해당하는 사람은 다함께돌봄센 터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. 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(이하 이 조에서 "종사제한범죄"라 한다)를 범 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
	고반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 우를 포함한다) 면제된 날부 터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
	범위에서 범죄의 종류, 죄질, 형기의 장단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
	사람  가. 「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 관한 특례법」 제2조제1항  각 호에 따른 죄  나. 「특정범죄 가중처벌 등 에 관한 법률」 제5조의2,

<신 설>

⑤ <u>다함께돌봄센터의</u> 설치기준 과 운영, 종사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한다. 제5조의4, 제5조의5, 제5조의 의의 및 제11조에 따른 죄다.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죄라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제 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, 제3조부터 제9조까지, 제14조의3및 제15조에 따른 죄

- 2. 종사제한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- ⑥ 종사자의 전력 조회에 대해 서는 제29조의3제5항부터 제7 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 이 경우 '아동학대관련범죄'는 '종 사제한범죄'로 본다.
- <u>⑦</u> 그 밖에 다함께돌봄센터의-